

1. 개정이유

코로나 19 확산 및 IT 기술발달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자동차 관리사업 및 자동차 경매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무실 최소면적 기준 삭제, 시설·장비 임차 허용, 경매장 주차장·경매실 면적기준 완화 등 등록(승인)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28)

1) 근무인력·시설규모와 관계없이 영업소에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하던 것을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소 시설기준을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임차 허용(안 별표21의2, 안 별표22, 안 별표25, 안 별표28)

1)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하던 것을 임차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등록 또는 신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다. 자동차경매장 승인기준 완화(안 제124조, 안 별표25)

1) 근무인력·시설규모와 관계없이 영업소에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하던 것을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경매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소 시설기준을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온라인 자동차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의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 경매실 면적 및 경매참가비용 좌석 기준을 기존보다 각각 30% 완화하려는 것임

라. 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22)

1)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에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2급 이상)을 갖춘 자가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3항 중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한다)”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1의2 제2호주)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장비 등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장비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21의2 제3호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나목의 장비 등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22에 성능점검자의 자격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교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2급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성능·상태점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설·장비 등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장비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25 제1호 주차장의 기준면적란을 “2,30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경매실의 기준면적란을 “14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경매실의 시설내역란을 “70석”으로 하고, 같은 호 성능점검·검사시설의 시설내역란 중 “(0.8m×10m, 인상능력 3톤 이상)”을 “(인상능력 3톤 이상)”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2급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성능·상태점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능점검·검사시설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점검·검사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4. 성능점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성능점검 수행이 가능하고, 그 사실

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성능점검·
검사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8 중 “대지(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대
지(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주를 다
음과 같이 한다.

주 : 1.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
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2.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 준 및 인력기준)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경매장영업소 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u>33</u> <u>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u> <u>한다</u>)으로 한다.	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 준 및 인력기준)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u>영</u> <u>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하여</u> <u>야 한다</u>)----.